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213호

다. 제출일자 : 2018. 10. 17.

라. 회부일자 : 2018. 10. 29.

2. 제안사유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안 제3조 관련 별표)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 및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

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5조)

라. 조문 표현 정비(안 제6~7조)

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본 조례의 시행규칙은 사문화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삭제 (현행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7. 5. ~ 7. 25.) 결과: 별도 첨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등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 위원회 단독 심의를 규정하는 한편 별표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¹⁾은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2017년 8월 법이 일부 개정되었음

※ 참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17.8.9 / 시행 '18.2.10.)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1)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울러 2018년 2월 영 일부 개정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 참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18.2.9/시행'18.2.10)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법제심사 결과²⁾에 따라 제2조에 ‘사업자’와 ‘승인관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3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영 [별표 1]³⁾의 대상사업과 동일하게 동 조례 상 별표로 두어 그 범위를 직접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⁴⁾은 삭제하고, 제6조(이의 신청)·제7조(사후관리)·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은 조문 표현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이는 조례의 이해도 증진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인 바,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2)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무담당관-12882(2018.9.6.)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4) 현행 동 조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조